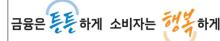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

| 보도 | 배포 시 | 배포 | 2023.1.11.(수)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|
| 담당부서 | 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1팀 | 책임자 | 실 장 | 김택주 | (02-3145-7860) |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류태열 | (02-3145-7863) | |

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 개최

│ 간담회 개요

- □ 1월 11일(수) 금융감독원은 7개 회계법인 대표(감사부문 대표 포함)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*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 - *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('22.10.4. 보도자료)

회계법인 간담회 개요

☑ **일 시**: '23. 1. 11.(수) 15:00 ~ 16:00

☑ 장 소 : 금융감독원

☑ 참석자 : (금감원) 장석일 전문심의위원, 김택주 감사인감리실장

(회계법인) 7개 회계법인 대표 등*

*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감사부문 대표, 삼정회계법인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, 한영회계법인 이광열 감사부문 대표, 안진회계법인 장수재 감사부문 대표,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,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,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

Ⅱ 주요 논의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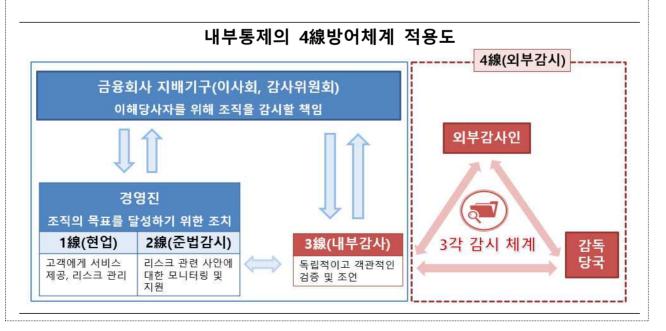
□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○ 외부감사인이 **내부회계관리제도**에 대한 **검토*** 또는 **감사***시 금융 회사 **내부통제 미비점** 등을 **점검**하여 **개선을 유도**할 수 있는 **방안**에 대해 **논의**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*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·감사 비교

| | 검 토 | 감 사 | | | |
|----------|--|--|--|--|--|
| 검증대상 |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,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 *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 * 점검결과, 미비점 및 시정계획, 직전년도 시정 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| 운영실태보고서외에도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(설계와 운영)를 검증 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| | | |
| 수행 절차 |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질문 이나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수행 | 회사가 작성한 내부통제 문서 검사, 통제절차의 재수행, 관찰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 | | | |

〈참고〉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외부감사의 관계

- ◈ BIS(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)는 '15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, 외부감사인이 참여하는 4선*방어체계(Four Lines of Defence) 구축을 권고
 - * 3선방어체계(금융회사 내부) +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
- □ 독립적인 감독당국과 **외부감사인의 감시역할을 강화**하여 **금융회사** 내부감사와 상호보완적인 **3가 감시 체계를 마련**
 - * 금융회사 내부감사 + 외부감사인 + 감독당국



- □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*이 존재하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**외부감사인**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공감하였습니다.
 - *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모든 내부통제를 대상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, 법적·기술적 한계로 모든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함
 -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, 설계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하여
 -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**내부통제 운영 강화**를 **유도**하고 **외부감사의 신뢰성도 제고**할 수 있도록 **노력**할 계획을 밝혔습니다.
 -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 업계가 개선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- □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회계감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,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
 - 금융회사 **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·감사**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 등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**적극 지원**하고
 - 향후 감사인감리시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.
 - ※ (붙임)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외부감사 연계 방안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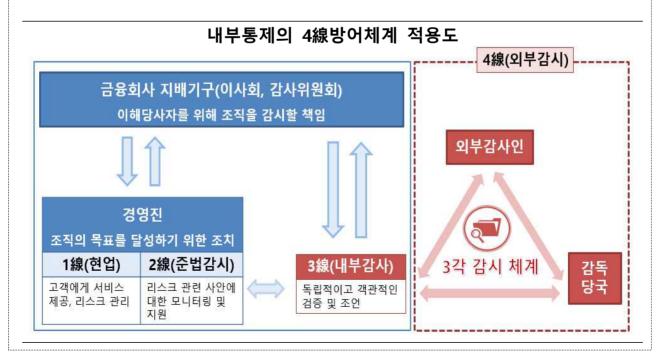
붙임

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외부감사 연계 방안

- < 내부통제 개선과제와 외부감사 연계 기본 방향 > -
- ① 금감원과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**내부통제 개선과제 중 재무보고 내부통제활동과 관련된 사항**이 금융회사의 **내부회계관리제도**에 적절히 **포함**되어 있는지 **설계의 적정성 평가**
- [2] **설계된 내부통제**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**운영의 효과성**을 점검
 - ➡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**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유도**하여 **외부감사*** 신뢰성 제고
 - *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모든 내부통제를 대상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**외부감사의 고유한계가 존재하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**

〈참고〉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외부감사의 관계

- ◈ BIS(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)는 '15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, 외부감사인이 참여하는 4선*방어체계(Four Lines of Defence) 구축을 권고
 - * 3선방어체계(금융회사 내부) +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
- □ 독립적인 감독당국과 **외부감사인의 감시역할을 강화**하여 **금융회사** 내부감사와 상호보완적인 **3각*** **감시 체계를 마련**
 - * 금융회사 내부감사 + 외부감사인 + 감독당국



1. (Control)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

① 순환근무제·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

- □ (개선안) 순환근무제도의 운영기준을 개선*하고 명령휴가 대상 확대, 불시명령 시행 등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
 - * <은 행> 장기근무자 목표비율 관리, 예외허용절차 강화, 예외 근무기간 한도 설정 등 <저축은행> 내규화를 통해 순환근무제 원칙 도입, 예외허용 절차 마련 등 <상호금융> 운영주기 강화, 예외기준 정비 등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다른 효과적인 예방통제가 없는 경우 순환근무제· 명령휴가제 등이 재무보고 내부통제활동 관점에서 적정한지 검토
 - 필요시 순환근무제·명령휴가제 **운영기준·절차의 합리성을 평가** (설계평가)하고 제도의 **형식적 운영 여부 점검**(운영 효과성 평가)

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

미흡사례

- (순환근무제도 운영기준 미흡) 직무순환 예외 허용 사유나 절차가 구체적 이지 않아 부서장 등 재량으로 직원 장기근무 가능
- (명령휴가제 부실 운영) 불시 명령 휴가대신 담당직원이 예정한 휴가로 대체하여 운영하거나 10년 동안 동일 부서에서 동일 직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동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음

- □ 명령휴가제도 세부 운영기준
- (명령휴가 대상자) 위험직무뿐만 아니라 <u>동일부서 장기근무자(영업점</u>, 본부부서 모두)
- ② (강제명령 의무화) 위험 직무 등에 원칙적으로 <u>강제 명령휴가 실시</u>
 - 위험업무 또는 장기근무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휴가 또는 파견시 점검 등 대체수단 허용
- ❸ (명령방식) '불시'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령휴가 전산 입력시간을 제한
 - (예) 명령휴가 전일 오후 5시 00분~명령휴가 당일 오전 9시 00분 등

②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강화

- □ (개선안) 직무분리·중요증서 분리보관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ID와 비밀번호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 강화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직무분리 대상 판단기준 및 관리기능 구축여부, 준법감시부의 점검기준·절차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직무분리 등과 관련한 기준 및 통제절차에 미비점 등이 없는지 평가 등*
 - * (예시) 통장, 인감 등의 분리보관 등 관리 기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, 승인권자 부재 시위임 등의 절차가 적절하게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, 회사가 설정한 직무분리원칙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전사적수준 통제 관점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 구축 여부 점검 등

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

미흡사례

- (직무분리 미흡) 직무분리, 통장·인감 분리보관 등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이 없어 위험성이 있는 주요 업무(구조조정·IB 등)에 미적용하거나 본부부서에서 통장·인감 관리직원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인이 모두 관리
 - 통장, 인감 등을 분리 보관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접근 가능
- (비밀번호관리 미흡) 비밀번호를 통장·단말기 등에 부착하거나 업무편의 목적으로 직원간 공유하거나, 승인권자 부재 시 위임 등의 절차가 설계되지 않아 타 직원이 승인권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승인

- □ 직무분리 관련 세부 기준 마련
- (분리대상 필수직무) 직무분리(겸무제한) 대상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율로 운영하되, 필수직무를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
 - * (예) 일반대출 : <Front> 대출영업 <Back> 서류 진위확인, 심사, 기표, 송금지급 등 여신심사 : <Front> 여신심사 <Back> 감정평가사 및 법무사 지정 등
- ② (관리시스템 운영) 직무분리 대상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
- ❸ (점검실시) 직무분리 운영현황을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점검 실시
- ② 접근통제 강화 방안
- ① (접속방식 변경) ID/비밀번호 방식 운영시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거나, 시스템 접근방식을 본인인증(신분증, 핸드폰 등) 또는 생체인식 방식으로 고도화
- ② (전산적 차단장치) 단말기 IP주소와 담당직원을 연동하여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도록 제한 등

③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

- □ (개선안) 자금인출(이체)시 결재 단계별^{*} 검증절차 및 수기 기안 문서의 전산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통제절차 강화
 - * 기안(자금인출요청서 등) → 직인 날인 → 지급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절차를 식별하여 설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는 통제절차 등의 마련 여부 점검
 - 수기문서 전산등록 통제 및 외부 수신문서 등의 문서진위
 여부 검증 절차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 평가 등*
 - * (예시) 자금인출 시 수행되는 거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외부 수신문서의 대사절차 수행 여부 점검, 전산 등록된 중요 수기 문서에 대해 중요 정보의 일치 여부를 사후 모니터링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등

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

미흡사례

○ (검증미흡) 출금전표 및 대외발송 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상이함에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되어 금융사고 예방·적발 실패

- □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기능 의무화
 - (**은행**) 직인날인 및 자금지급시 기안문서 번호, 금액 등 핵심내용 일치여부 확인 등
 - (저은·여전) 결재시 지출결의서 등 관련증빙 확인, 준법감시부서 등 점검 절차 마련
 - (상호금융) 지출결의서 작성(신청)과 집행내역간 상호검증 등
- ② 수기 기안 문서 전산등록 및 외부 수신문서 등의 문서진위 여부 검증절차
 - (은행) 수기기안문서 전산 등록 의무화, 외부수신문서 검증 강화 등
 - (저은 여전) 수기문서 및 외부수신문서의 전산등록 의무화, 준법감시부서 등 점검절차 마련
 - (상호금융) 시재금 검사결과표의 전산 입력·승인 등 전산 통제방안 마련

④ PF대출 자급집행 관리 강화

- □ (개선안) 직무분리,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, 전산시스템(송금) 개선 및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등 마련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금융회사 내부통제 설계의 적정성 평가시 PF대출시 영업·자금집행 직무 미분리, 자금인출요청서 검증소홀 등 미비점 등을 식별

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

미흡사례

○ (직무미분리 등) PF대출 담당직원이 PF대출 영업·기표·송금업무를 전담하면서, 송금시 계좌주명 임의변경,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, 중요증서(차주전표·통장) 도용 등을 통해 PF대출금 횡령

- □ PF대출 자금집행 관련 사고예방 대책(예시)
- ① (직무분리) PF대출 영업업무, 기성고에 따른 대출기표(승인)업무, 자금송금 업무 담당부서(또는 담당자) 분리
- ② (수취인명 임의변경 차단) 송금시 수취인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개선
- **❸ (지정계좌 송금제)** 사전 등록한 지정계좌(신탁사·거래처 계좌 등)로 PF대출금이 입금가능하도록 제한하고, 지정계좌 등록·변경시 사전 확인절차 강화
- ④ (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) 회사 공용메일 등을 통한 자금인출요청서 수신, PF 대출금 송금시 차주 앞 문자발송, PF대출 잔액 정기통지 등

⑤ 채권단 공동자금 정기검증 절차 마련

- □ (개선안) 기업구조조정 관련 채권단 공동자금의 경우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검증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자금에 대한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채권단이 확인하는 절차 마련 여부 점검
 - ※ (미흡사례) 워크아웃 기업 매각진행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자금 관리 현황을 확인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횡령

⑥ 대출취급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

- □ (개선안) 대출증빙은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,진위확인이 곤란한 경우 추가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대출취급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절차 구축 여부나 진위확인이 곤란한 경우 대체확인 절차가 적절한지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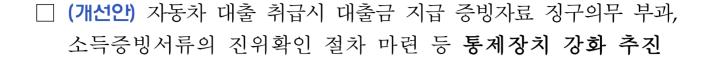
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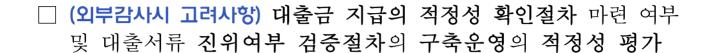
미흡사례

○ (진위검증 미흡) 일부 차주가 작업대출 조직이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진위확인 절차가 없어 부당대출 발생

- □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 및 추가확인 절차 강화
 - 대출증빙은 **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**(전자세금계산서<국세청>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<건강보험공단> 등)를 **원칙**하고 **진위확인 가능 서류는 담당자**가 **반드시 진위확인 절차 수행**(예: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력 조회)
 - 진위확인이 곤란한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절차*를 의무적으로 실시
 - * (예시) ① 해당기관에서 자료를 팩스로 수신하거나 직접_유선통화
 - ② 차주 제출서류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제3자 통화 등으로 재확인

⑦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





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

미흡사례

- 대출모집인이 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중고 상용차금융 대출금을 편취^{*}하거나 허위 차량을 이용하여 딜러론 편취
 - * 상용차는 승용차 대비 대출금액이 크고 차량 명의이전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차주에게 직접 입금시 용도외 유용 등 발생 가능성이 있음
- 렌트카사업자가 렌트카 사업의 수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를 요구한 후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건의 할부,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편취

| 에스크로 | 계좌를 | 활용한 | 대출금 | 지급 등 | 대출금 | 子 지급 | 방식 | 개선 하고 | 대출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|
| 모집인에기 | 게 지급형 | 하 대출근 | 이 판미 | 내점에 ㅈ | 급된 중 | 흥빙자료 | 징구: | 의무 부과 | |

- □ 명의대여 개연성*이 있는 경우 기 보유 차량 실사용 여부, 대출서류 진위 여부 등 확인절차를 강화
 - * 다수의 자동차 대출 보유, 특정 시기에 다수의 자동차대출 실행 등

2. (Capability)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

①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

- □ (개선안) 자점감사자 취급업무에 대해 제3자가 점검하는 등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, 자점감사 대상 항목*을 개선
 - * 예) <**저은>** PF대출 자금집행, 고액 경비·자본예산 집행, 중요실물 관리실태, 고객 원장변경 등 추가 <**상호>** 일일 자점감사 항목에 시재금 점검 포함 등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자점감사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장치, 모니터링*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점감사 대상항목의 적정성 검토
 - * 자점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준법감시부서(은행·저은·여전) 등에서 점검하여 이행실태 부실 부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페널티 부여, 취약점에 대한 개선절차 등 마련

② 은행 자체 상시감시 체계 강화

- □ (개선안) 이상거래 상시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이상거래 추출시 보고·처리 절차 체계화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상시모니터링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 포함여부,이상거래 확인시 보고·처리 절차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

③ 상호금융조합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

- □ (개선안)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활동 등을 통한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담당 직원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감사담당 직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·절차*의 마련 및 운영 여부에 대해 점검
 - * 예) 원칙적으로 겸직 불가 및 소형조합의 경우 여수신 업무 등 금융사고 우려 업무 겸직 금지

3. (Culture)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

① 내부고발자(whistle-blower) 제도 실효성 제고

- □ (개선안)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*하고,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절차 구체화**
 - * 예) 직원 자체 발견을 계기로 금융사고 적발시 내부고발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포상 실시, 금전적 평가가 곤란한 제보에 대한 포상방안 마련 등
 - ** 예) 자체감사시 내부자 고발의무 위반을 필수 감사항목으로 운영 등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전사적수준 통제 관점에서 내부고발자 **포상기준**의 합리성 및 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절차 마련 여부 등 확인

② 금융회사 자체 「금융사고 예방지침」 실질화

- □ (개선안) 기존 법규 내용 중심의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보다 구체화*
 - * 예) <은 행> 영업 특성을 고려한 부점별 금융사고 예방지침 구분, 사고예방 활동의 업무별·직급별 역할·책임의 명확한 명시 등(개선)
 - <저은·여전>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업계 표준안 마련
 - <상호금융> 신협·농협·수협·산림 등 업권별 「금융사고 예방지침」 마련(개선)

※ 금융사고예방지침 표준안(예시)

- ♠ (범죄행위 방지대책) 명령휴가제, 고위험사무 직무분리 등에 대한 세부운영기준 명시
- ② (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) 사고예방교육, 지침 실효성 정기점검 및 최신화 의무부과
- ❸ (이행상황 자체검사) 단위업무·직급별 점검사항 마련, 자점감사, 준법감시부서(또는 감사부) 점검, 명령휴가자 특명검사 실시 등
- ④ (업무상 고객정보 이용기준 등) 직급별·업무별로 조회권한 차등부여, 마케팅 동의서 內 명시된 정보만 이용 등
- □ (외부감사시 고려사항) 권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여부,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금융회사의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통제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